

의안번호	제880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424회)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안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안치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오영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관광약자의 범위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오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광약자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포함(안 제2조)
- 인용조례의 제명을 수정(안 제6조)
 - － 「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임산부”를 “임산부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(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
1. “관광약자”란 장애인, 노인, <u>임산부</u>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 <u>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(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관광환경 조성지원) ① · ② (생 략)	제6조(관광환경 조성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 <u>충청북도 사무위탁조례</u> 」에 따른다.	③ ----- ----- 「 <u>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</u> 」-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관광진흥법[법률 제20357호, 2024. 2. 27.]
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행업 :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·숙박시설,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, 여행에 관한 안내,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
2. 관광숙박업 :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
 - 가. 호텔업 :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·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
 - 나. 휴양 콘도미니엄업 :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,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·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
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
 - 가.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·문화·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 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(이하 “관광숙박시설”이라 한다)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 - 다. 야영장업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)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4. 국제회의업 :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(세미나·토론회·전시회·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·준비·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

5. 카지노업 :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·트럼프·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
 6.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 : 유기사설(遊技施設)이나 유기기구(遊技機具)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(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7. 관광 편의시설업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]

제7조(대상시설)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공원
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3. 공동주택
4. 통신시설
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[법률 제19674호, 2023. 8. 16.]

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장애인·

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이 규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오인용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